

『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년 6월 17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날로 대형화 되는 추세와 사고 수습의 적시성 등 해상 조난사고의 특성을 고려했을때 민·관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매우 큼.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 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조난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.(안 제3조)
- 지원대상을 규정함.(안 제4조)

- 지원금은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름(안 제5조)
- 지원금 신청 방법을 규정함.(안 제6조)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13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해수면"이란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.
2. "수난구호"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, 항공기, 수상레저기구 등(이하 "선박 등"이하 한다)의 수색·구조·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.
3. "조난사고"란 해수면에서 사람의 익수·추락·고립·표류 및 선박 등의 침몰·좌초·전복·충돌·화재·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.
4. "민간해양구조대원"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.
5. "수색"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.
6. "구조"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7. "구난"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경비지원) 인천광역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대상)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시장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조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한다.

1.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
2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조난사고

제5조(지급기준) 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·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금 신청 등) ① 제4조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급결정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여야 한다.

제7조(환수조치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민간해양구조대원 수난구호비용 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
청구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종사업무				
청구액	금액			
	산출근거	*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.		

「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수난구호 비용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비안전센터장 (인)
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장 (인)

인천광역시장 귀하

청구인 제출서류	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									
처리절차										
청구서 작성	→	접수	→	결재	→	발급	→	신청	→	접수
청구인		해양경비안전센터장 출장소장		해양경비안전센터장 출장소장		해양경비안전센터장 출장소장		청구인		인천광역시장

210mm × 297mm(백상지 80g/㎡)